

# 기술분야 벌점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

## □ 회의 개요

- 일시 : 2022.04.21.(목) 14:00 ~ 15:00
- 장소 : 본사 12층 공용회의실
- 참석위원 :
  - 이원철 위원장, 이동구 위원, 이동화 위원, 송정주 위원
- 참고인 : 건설사업부 조윤상 차장
- 상정안건
  - 「은평센터 신축공사」 현장에서 발생(2021.05.07.)한 중대재해(추락 사망사고)와 관련하여, 우리공사 재난안전실 「사고조사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요청」 및 건설사업부(측정부서)의 벌점심의 요청에 따른 벌점 책정심사
- 회의결과
  - 의결서 참조

## □ 위원 발언 내용

### <이동화 위원>

- 추락했던 원인 발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제202165850344 진행 중이지만,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바, 측정부서에서 상정한 대로 벌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<송정주 위원>

- 시공업체의 경우 주요 부실내용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의 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부실벌점 항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, 물론 시공업체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실 내용에 따라 벌점 책

정한 사항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. 또한,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에 부과한 별점 항목도 해당사항에 맞게 부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의 부서에서 처분한 대로 소위원회에서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.

### 〈이동구 위원〉

- 건설기술진흥법 부실별점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, 설치 상태의 불량이 업체 책임의 경증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3점으로 되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. 부실의 중요도와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현장에 설치된 가시설물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, 현장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당사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됨.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점 ~ 2점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그리고,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책정한 대로 1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〈이원철 위원장〉

- 이동구 위원이 말씀하신 게 10번 항목의 3점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, 2점은 보수·보강이 필요한 경우이고, 1점은 없는데... 그러면, 보수보강의 경우로 보고, 사건사고는 당사자 잘못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는데...

105671650850325

### 〈이동화 위원〉

- 11번 항목의 다 항목을 보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가 2점인데, 명확하게 10번 항목에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고,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경감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.

### 〈송정주 위원〉

- 이동구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, 사고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됨. 그렇지만, 현재로써는 인과관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벌점을 2점으로 낮춰서 적용했을 때 정확하게 문구가 부합하지 않아 벌점부과 대상자 측에서 소송이 들어 왔을 때 공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소위원회가 아닌 본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.

### 〈이동구 위원〉

- 열악한 현장이고, 공사하기 힘들고, 건설사가 중소업체이고, 전체적으로 대응이 상당히 빨랐고, 준공도 무사히 마친 점을 감안해서 드린 말씀이었음.

### 〈이원철 위원장〉

- 제가 봤을 때는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,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방호선반, 추락방지망 등이 높이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설치되었어야 함. 현장이 열악하고, 시공사가 중소업체지만 안전사고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벌점을 경감하기는 불합리해 보임. 감리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분들이 이견이 없으신 걸로 보임.  
따라서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소속건설기술인 벌점 3점,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벌점 1점 부과함.

1056711650850325